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월 5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4년 2월 21일
- 나. 제안자: 한상욱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3일
- 라. 상정일자: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4. 3. 5.)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상욱 의원)

□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¹⁾」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 중소벤처기업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절차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골목형상점가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
 -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 요건 삭제
-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 (안 제4조)
 - 기준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 제외 가능 신설

1)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으로, 지자체의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2024. 1월 기준)

명칭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규모		지정일
				면적	점포수	
강서수산시장 골목형상점가	강서수산시장 상인회	서재광	발산로 24(외발산동)	2,749.42㎡	87개	2023.12.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제2호의2,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4. 2. 23. ~ 3. 4.)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²⁾에 따라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화하여 관내 골목형상점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중소기업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2022. 1. 13. 시달)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관련 서식 마련 등은 규칙으로 위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에서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요건을 완화하였음

현행	개정안
<p>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이에 필요한 수와 면적에서 제외한다.</u></p> <p>1. (생략)</p> <p>2. <u>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u></p> <p>3. <u>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u></p> <p>4. (생략)</p>	<p>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 ----- ----- ----- ----- --. <u><후단 삭제></u></p> <p>1. (현행과 같음) <u><삭제></u></p> <p><u><삭제></u></p> <p>4. (현행과 같음)</p>

-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용면적 산정을 완화함

현행	개정안
<p>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단서 신설></p> <p>2. (생략)</p>	<p>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 ----- -----.</p> <p>1. ----- ----- ----- -----</p> <p>---. <u>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u></p> <p>2. (현행과 같음)</p>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홍보·마케팅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1년 5월 제정되었으나,

-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이 상점가 등록 요건³⁾ 보다 엄격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1. 11. 2. 개최)」에서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골목형상점가 조직화 및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

3)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인정 기준

구 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근거 법령		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법
인정방법		시·군·구에서 인정 후 공고	별도 인정절차 없음	시·군·구의 조례로 지정
인정 기준	구역 면적	구역면적 1,000㎡ 이상*으로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있는 곳	구역면적 2,000㎡ 이내에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업종 및 점포수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50개 이상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30개 이상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 점포수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
	점포	도·소매점포 50% 이상	도·소매점포 50% 이상	해당 없음
	기타	-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각각 1/2 이상의 동의 *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신청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고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기타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온누리상품권 사용여부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 또한, 「골목형상점가」의 도입 취지는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한 것으로, 해당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대한 의견수렴 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를 시달('22. 1. 13.)하였고, 타 지자체는 해당 권고사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 구 또한 골목형상점가의 당초 도입 취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진입장벽을 낮추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함과 더불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과 중복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등 사업추진 과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